

제339회 임시회
2015. 4. 30.(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4. 30.(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4월 22일

-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조운희)

1. 제안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66조의 2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설립 목적, 센터의 위치(안 제1조, 제2조)
- 센터의 기능(안 제3조)
- 관리·운영의 위탁, 예산의 지원(안 제4조, 제5조)
- 위탁의 취소, 지도·점검(안 제6조,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난·안전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해 해당 기구의 목적, 기능, 관리·운영의 위탁,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이를 위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광역시도의 재난 대응조직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7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재난안전 실·국 추가)되어 충청북도도 재난안전 조직을 상반기 중에 조정할 계획임. 따라서 향후 조정되는 재난대응 실·국의 기능 및 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 및 역할과 센터의 인력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56
----------	-----

제출연월일 : 2015년 4월 1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설립 목적, 센터의 위치(안 제1조, 제2조)
- 센터의 기능(안 제3조)
- 관리·운영의 위탁, 예산의 지원(안 제4조, 제5조)
- 위탁의 취소, 지도·점검(안 제6조, 제7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 6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에 설치한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와 과학적 분석
2. 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3.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4.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DB구축과 분석
5. 민·관·학·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6. 안전문화포럼 구성 운영
7. 그 밖의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대학 또는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센터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련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예측과 정보전달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 예방에 관한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규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8. 그 밖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한다.

④ 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 하여야한다.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 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예산의 지원)의 근거로 필요한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안 제5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연구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인건비, 사무관리, 연구개발비 등)

나. 추계의 전제 : 인력 2~5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다. 추 계 결 과 : 15년~18년까지 총 1,080,000천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마. 인력운영계획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인력운영	-	2 명	3 명	4 명	5 명

※ 인력운영은 최소한(2명)으로 출범 후 업무량 등을 감안 증원지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세 출	1,080,000	0	180,000	250,000	300,000	350,000
관리·운영비	1,080,000	0	180,000	250,000	300,000	350,000

6. 작성자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장 손자용